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7월 10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7월 12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의 개정으로
-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 2명을 두도록함에 따라 배치근거와 담당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부지사의 배치 근거 부여(제1조)
- 부지사의 분장사무 규정(제2조)
 - 행정부지사 : 일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정무부지사 : 정무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 검토의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직 부지사를 두고 이와 관련한 담당사무의 분장내용을 조례로서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 1명과 정무직부지사 1명을 두고 이와 관련한 사무분장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부지사는 종전의 일반적 행정사무에 관한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도, 감독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정무직 부지사는 정무업무에 관련한 각종행사 및 회의 참석과 의회 및 국회등과 관련되는 대외업무 등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